



특허권 우선심사 청구시 등록기간 대폭 단축

앞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상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과정을 거쳐특허출원 후 5개월이면 특허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특허 등록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특허청(www.kipo.go.kr)은 최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선심사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출원후 1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허결정 혹은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심사를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특허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등록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등록을 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를 받은 경우라 해도 최소한 1년 3개월이 경과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통상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감안한 기간을 감안해도 5개월 정도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국가의 산업정책적 측면 및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확보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제도는 통상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

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공해방지, 전자거래, 수출촉진에 관한 출원을 비롯해벤처기업, 부품·소재기술 개발 전문기업의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특허관리 허술

국내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 대다수가 지적재산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선행 특허에 대한 검토 없이 외국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등 체계적인 특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적재산권 분쟁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선통신지적재산협회가 지난 상반기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 141개 업체(응답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관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 중소기업들은 특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도입하는 등 특허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는 미흡해 초보적인 관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22개 기업중 2개(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을 뿐, 대다수의 기업(16개, 73%)은 특허 출원, 등록 등 단순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담당자만 두고 있다.

특히 4개기업(18%)은 특허담당 업무조차 정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특허관리 부서를 설치했다 라도 거래하는 특허법률사무소의 업무를 관리 감

독할 뿐, 특허침해 감시나 특허분쟁처리, 기술이전과 라이선스 계약 전담업무, 연구개발 방향 지시 등의 핵심 업무는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은 10건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59%로 가장 많았고, 10~20건이 32%이며 전무한 경우도 9%나 차지했다.

특허관련 비용정산은 '특허출원사안이 발생하면 재정담당부서와 개별 협의하는 기업(64%)과 연구개발 예산내에 특허예산을 포함시켜 집행하는 경우(27%)가 대부분으로 합리적인 특허출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개별 협의가 자칫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특허출원을 보류시키는 경우가 많아 특허출원 예산을 미리 정하는 등 특허출원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본적인 특허관리 도구인 특허맵(Patent Map)을 활용하는 경우도 46%를 차지했으며, 41%는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파악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외국기업과 라이선스계약 전에 국내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검색해보는 경우는 전체의 46%에 불과했으며, 기존에 획득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도 36%에 머물러 효율적인 특허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반면 기술도입 계약 경험이 있는 경우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특허침해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가 41%에 이르러 실제 특허관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응답기업 모두가 특허법률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선택기준(복수응답)은 해당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82%), 서비스 신속도와 친절도(4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담당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설문조사 자체의 응답율(15.6%)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경영자의 특허관리와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며 구체적인 사안별 지도를 통해 특허관리역량을 키우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기술수준 높아지고 기술무역수지는 악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 힘입어 관련산업의 매출과 해외 특허건수가 늘어나는 등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이 진일보했지만 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기술동향 분석'에 따르면 90~99년 정부가 3천875억원을 투입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61개 과제에 연계 매출증가분을 분석한 결과, 작년까지 투자액의 40배인 18조 4천억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또 87~99년에 6천592억원을 지원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도 99년까지 7조5천억원의 매출이 발생, 투자액 대비 11배의 매출증대를 달성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특히 반도체는 89년, 전자부품 90년, 자동차는 92년 등 민관합동 연구개발에 착수한 산업의 경우 수출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지적재산권 출원도 90년8만2천건에서 작년에는 22만 6천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해외특허출원 건수는 93년 7천985건에서 97년에는 2만9천647건을 기록, 93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47.1%의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 '테크놀로지 리뷰'가 지난해 미국내 출원건수를 5개분야별로 나눠 세계특허경



쟁력 상위 10대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분야에서 삼성전자가 4위, 반도체분야에서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8위에 올랐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기술무역의 경우 수출이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93년 4천510만달러에서 99년에는 1억9천327만달러로 늘었지만 도입도 93년 9억4천641만달러에서 99년에는 26억8천575만달러 규모가 됐다.

이에 따라 93~99년 사이의 연평균 기술수출 증가율은 12.7%, 도입증가율은 10.8%로 나타났고 기술수지는 93년 9억130만달러에서 99년에 24억9천248만달러가 됐다.

특히 우리의 기술수출은 99년의 경우 미국(1천720만달러), 일본(14만달러), 독일(81만달러) 등 선진국보다는 중국(9천470만달러), 말레이시아(1천520만달러) 등 아시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의 경우 95년 236건 19억4천700만달러에서 99년에는 83건 26억8천575만달러를 기록, 건수는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금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20대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총 민간 R&D 투자액에서 차지한 상위 20대기업의 투자액 비중이 38.7%였으나 우리는 67.9%를 차지, 상위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9년 국내 상위 20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가 매출액의 6.09%에 해당하는 1조5천923억원, 현대전자가 15.6% 수준인 9천402억원, 현대자동차가 5.05%인 7천200억원, 한국통신이 6.58%인 6천31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

특허청, BM특허 기준 엄격적용 등록납발 방지

올 하반기부터 비즈니스모델(BM)특허가 본격적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국내 BM특허 출원은 99년 1133건에서 2000년 9895건으로 폭증했다. 이들 출원분이 본격 심사되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상의 상거래 관행이 특허등록돼 혼란을 초래하고 광범위한 권리범위에 대한 특허권 남발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특허청은 순수한 영업방법, 종래의 영업관행을 인터넷으로 단순 자동화한 것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 기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분류를 기존 2개에서 27개로 세분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 BM특허는 2000년 58%가 등록결정 됐으나 올 상반기에는 35%로 낮아지는 등 등록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해 올 1.4분기 미국특허청의 등록결정율은 47%, 일본은 25%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BM특허는 영업방법과 기술적 요소가 결합돼야 가능하고 순수한 영업방법이나 영업관행을 인터넷으로 단순 자동화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며 "심사기준이 실제심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쉽게 설명한 'BM특허 심사사례집'을 다음 달중 발간해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금

용분야의 특허출원이 점차 늘어나고 해외업체의 공세도 강화돼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93년 시티뱅크가 국내 출원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원천기술은 국내 은행의 시장진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다음 달 금융분야 특허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재산권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매일경제

국내대학 특허 너무 적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립공대(MIT)의 특허보유 건수가 2158건인데 비해 서울대와 연세대가 학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각 1건에 불과하고 고려대는 아예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공대는 159건의 특허를 대학명의로 보유, 전국 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개 대학과 14개 부설연구소는 각각 245건, 93건 등 총 24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포항공대는 159건의 특허를 등록해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 경북대 강릉대가 각 6건, 조선대는 4건, 울산대 선문대 각 3건, 건양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해양대가 각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은 보유특허가 1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려대등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보유특허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부설연구소도 서울대 공대교육연구재단이 43건으로 비교적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고려대 자연 과학연구소 등 9개 대학 부설연구소는 각각 1건의 특허를 등록·출원에 그쳤다.

이처럼 대학과 부설연구소의 보유특허가 저조

한 것은 대부분의 연구가 특허로 등록될 만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등 실속이 없거나 형식적인 연구에 머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은 학교나 연구소 명의로 특허가 등록될 경우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상당수의 연구결과가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포항공대는 특허가 등록된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는 40%, 연구소에는 10%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대학측은 50%만 갖는 자체적인 직무발명 규정을 마련해 현재 159건의 특허를 대학명의로 등록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립대가 3517건(분교 합산)으로 가장 많고 MIT 2158건, 스탠퍼드대 1265건 등 연구결과가 활발해 우리나라 대학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과 부설연구소 대부분이 기술개발 연구성과를 특허 획득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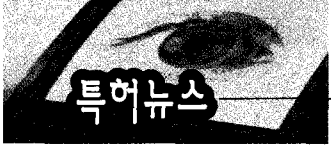
출처 문화일보

향토 지적재산 부가가치 높인다

나주배, 영광굴비, 충남 보령의 천연갯벌 진흙, 하회전통탈 등 전통문화 유산이나 고유산물 등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무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향토지적재산들을 고부가가치화시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향토지적자산을 현대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도록 지방공기업 또는 지



방공기업과 지방연고기업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했다"면서 "미국의 선키스트나 프랑스의 코냐 등 외국의 향토 고유브랜드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전통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의식 부재, 체계적인 지원 미비 등으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의 조사결과, 향토지적재산은 전통음식, 관광문화상품, 캐릭터 등 모두 6천151건이 발굴됐으나 이중 16%인 1천8건만이 특허권, 상품권 등의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향토 지적재산의 잠재가치를 심층 분석해 조사명세의 카드화 및 전산화로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 권리침해를 방지하며 ▲민·관·산의 공동협력하에 종합적인 육성체계확립과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지역교류 특화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육성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향토지적자산을 사랑하는 학계, 관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참여하는 '향토 지적재산 살리기 본부'를 창립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침해 사례로 ▲일본이 우리 된장과 청국장을 미소, 낫도라는 명칭으로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었고 ▲미국, 캐나다의 1천200고지 이상의 산장 건축에 한국온돌을 사용하며 ▲미국인이 북한산 '털개회나무' 씨앗을 반출해 '미스킴라일락' 정원수로 개발해 고가로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 상표 등록 500,000건 돌파

- 국내 상표제도 도입 52년만에 상표등록 50만건 돌파 -

○ 우리나라에 1949년 11월 상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52년만인 2001년 8월 23일에 500,000번째 상표권이 등록되었다.

- * 8월23일은 상표등록 신청에 의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며, 등록신청에 대한 서류의적법성 및 수수료납부 등의 심사를 마치고 난 후 8월 29일 등록증을 교부하게 됨
-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민들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과 함께 우리기업의 자체브랜드 개발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브랜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앞으로는 인터넷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국내외적으로 상표권 확보 경쟁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번에 500,000번째로 등록된 상표는(주)크라운베이커리(대표:윤영달)가 지난 2000년 5월 25일 빵 및 케이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했던 '추카도리' 상표이다.

- 국내 상표등록 건수 증가세 갈수록 두드러져 -

- 우리나라 상표등록 제1호는 1949년 11월 28일 천일산업의 1명이 운동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이며,
- 이후 35년만인 1984년 4월 13일 10만호, 이후 6년후인 1990년 9월 5일 20만호, 이후 4년후인 1994년 10월 13일에 30만호, 이후 4년이 채 못된 1998년 3월 20일에 40만호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이래, 불과 3년만에 50만호의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국내 상표등록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그 등록추세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0년대 이후 국내 상표등록이 급격히 증가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점과 함께, 과거 OEM방식에서 자체브랜드 상품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고유브랜드 개발 노력의 증대와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사이버 시장에서의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

○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 노력이 지속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상표등록 100만호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Global Brand) 확보에 노력할 때 -

○ 상표출원규모의 국제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간 상표출원은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5위(1999년 기준)의 상표출원 대국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내국인 국내등록 대비 해외 등록 비율은 77.2%(1999년 기준)로 주요 상표출원대국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브랜드의 해외진출 및 홍보활동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노력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 21C에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만큼 국내 고유브랜드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국가경쟁력의 척도라 할 수 있다.

다만, 고유브랜드의 해외진출 규모라는 양적 측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브랜드의 질적 가

치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표의 질을 높여, 미국의 Coca-cola"나 일본의 SONY"와 같은 소위 글로벌 브랜드 확보를 위한 상표개발 및 관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 상표등록 50만호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장, 50만호 등록 기념행사 개최, 상표권자에 기념패 전달 -

○ 한편, 8월 29일(오전 10시) 임내규(林來奎)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표권 등록 50만호 달성을 기념하여 50만호 상표 등록권자인 (주)크라운베이크리의 대표 운영 달씨 및 본 상표등록을 대리한 이덕록 변리사를 대전청사로 초청하여 50만번째 상표등록증과 기념패를 전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임청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상표권은 특허기술과 함께 기업경영의 주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이 상표권 확보 및 관리에 더욱 전력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하였다.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 및 3국 +ASEAN 대표회의, 사상 첫 개최

- 3국 특허제도 통일화 추진 및 아시아지역 특허협력 강화 -

○ 임내규(林來奎) 특허청장은 9. 11일(화) 일본 동경에서 중국 지체권 청장(Mr.WANG,Jingchuan) 및 일본특허청장(Mr. Kouzo OIKAWA)과 제1



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동북아시아 특허 제도의 통일화 및 특허심사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특허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 제도의 구축이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촉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무협의체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의 상설화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임내규 특허청장은 3국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같은 날 후에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대표들이 참석한 제1차 3국+ASEAN 회의를 갖고 아시아 지역내의 특허권의 보호강화 및 특허기술의 유통촉진을 위해 역대 특허청간의 전산망 구축, 지재권 인력개발, 특허정보의 교환 등 역대 특허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제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

- 3국 특허청장은 3국간 투자 및 무역의 촉진을 위해서는 특허 제도 및 실무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 이를 위해 특허제도 통일화, 특허전산망 연결, 심사정보 및 심사결과의 활용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이번 회담은 한국 특허청장의 제안으로 개최된 것으로, 3국의 특허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특허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 3국 특허청장은 특허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3국간 무역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 가시화되는 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뒷받침할 3국의 통일된 특허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3국 특허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특허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사기간의 단축, 심사질의 향상, IT, BT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특허정보 D/B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출원인 위주의 특허절차 운영 등 3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3국특허청이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3국간에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가 통일화되면 심사 관련 정보의 상호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특허청의 심사부담이 경감되고 심사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 결과적으로 출원인은 간편하고 저렴한 특허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이 가능케 됨으로써 어느 1국에 등록된 특허가 다른 국가에서도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되어 3국내의 특허권 획득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 이밖에도 3국은 WTO 및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차원의 지재권 국제규범 논의 및 형성 과정에서도 3국 특허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현재 WIPO에서 논의중인 특허협력조약(PCT)의 제도 개혁, 특허실체법의 통일화(특허성 심사사항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국제적인 통일화), 지재권에 의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문제 등 국제적인 지재권 현안에 대해서 특허출원 건수면에서 세계 5위안에 있는 3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세계지재권규범의 형성을 주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3국 특허청은 3자 교류 및 협력방안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3국 특허청장회담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3국 특허청간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joint expert meeting) 개최를 통해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계기로 특허분야에서 특허기술과 지적재산이 3국간에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고 기업의 특허기술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동북아경제권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통일된 특허제도를 구축할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1차 3국+ASEAN 회의>

- 3국 특허청장회담에 이어 개최된 제1차 3국+ASEAN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특허권 보호강화와 특허기술 유통촉진을 위해서 특허제도의 출원인 편의성 제고와 정보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청의 전산화 및 인력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차원의 노력을 공동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별히 이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운영중인 우리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온라인 출원시스템인 KIPONET이 전산화사업의 모범사례로 소개되면서 각국 대표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은 아시아 경제발전과 기술교류의 촉진을 기여할 수 있는 특허제도의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제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1. 9. 11.(화), 10:00 - 12:00
- 12:00 ~ 13:30 : 한·중·일 3국 청장 오찬
- 장소 : OKURA 동경 호텔 (일본, 동경)

2. 3국 대표단

- 한국특허청 (KIPO) : 임내규 특허청장 외 3명
- 일본특허청 (JPO) : Mr. Kouzo OIKAWA 특허청장 외 4명
- 중국지재권청 (SIPO) : Mr. WANG Jingchuan 지재권청장 외 3명

3. 주요 협의사항

- 3국 청장회의의 연례화
- 3국 특허협력체제의 구축
- 국내 제도의 최근 발전사항 소개
- 국제적 이슈 논의 및 협력방안
-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방안
- 3국 공통의 과제 및 도전 사항에 대한 협력

■ 제1차 3국+ASEAN 대표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1. 9. 11.(화), 14:30 - 16:30
- 18:30 ~ 20:30 : 3국+ASEAN 대표 만찬
- 장소 : OKURA 동경 호텔 (일본, 동경)

2. 각국 대표단

- 한국특허청, 일본특허청 및 중국지재권청의 대표는 3국 청장회의의 대표와 동일
- ASEAN 국가 특허청 대표 명단 (미확정)

3. 주요 협의사항

- 지재권분야에서의 3국+ASEAN의 협력방안
 - 3국+ASEAN 회의의 비정기적 정례화
 -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 국제적 이슈 논의 및 협력방안
 - 인력개발에의 협력
 - 한·중·일의 전산화 소개
 - 특허시스템 활용의 홍보